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 )

의안 번호	474
----------	-----

발의연월일 : 2026.03.13.

발 의 자 : 유지웅 · 박미정 · 이은경  
김지훈 · 안병두 · 신정태  
하서영 의원(7명)

찬 성 자 :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특수업무 분야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 신규 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커 권한의 남용과 채용 비리의 소지가 있음. 이에,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을 고시토록 하여,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 비리의 발생 소지를 사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규칙 내 미비 사항 전반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 비율의 고시 의무를 규정(안 제16조)
- 나. 의회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 삭제 및 관련 조문 수정(안 제17조, 제20조등)
- 다. 임용결과 통보, 겸임직급 관련 내용 규정(안 제23조, 제26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 3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라. 입법예고 : 규칙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4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을 “7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하는 자격증”을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하는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의”를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중 “별표 8”을 각각 “별표 7”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표 8”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제4항제3호에 따른다”를 “제3항제3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2항까지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별표 14와”를 “별표 10과”로, “별표 15와”를 “별표 11과”로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9조 중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를 “영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3과 같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31조(중전의 제33조)제1항 중 “별표 21과”를 “별표 1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2”를 “별표 15”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하고, 별표 8 및 별표 10을 각각 별표 7 및 별표 8로 한다.

별표 7(중전의 별표 8)의 제목 중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8(중전의 별표 10)의 제목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0(중전의 별표 14)의 제목 중 “제17조제8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를 삭제하고, 별표 12 및 별표 14를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으로 한다.

별표 9(중전의 별표 12)의 제목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2(중전의 별표 16)의 제목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로 한다.

별표 14(중전의 별표 21)의 제목 중 “제33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1을 삭제하고,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표 11 및 별표 12로 한다.

별표 11(중전의 별표 15)의 제목 중 “제17조제8항”을 “제17조제7항”으

로 한다.

별표 15(중전의 별표 22)의 제목 중 “제33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3을 삭제하고, 별표 18부터 별표 22까지를 각각 별표 13, 별표 14 및 별표 15로 한다.

별표 17부터 별표 20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조----- ----- ----- ----- ----- -----.</p>
<p>제3조(인사담당관) <u>인사담당관은 다음과 같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의회사무국장</p>	<p>제3조(인사담당관) <u>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lt;삭 제&gt;</p>
<p>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응시수수료) ① ----- ----- ----- ----- ----- ----- -----.</p>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생략)

②·③ (생략)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3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

1. ----- 공무원-----

2. ----- 7급공무원-----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이하

-----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하는 자격



구 및 시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시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  
-----  
-----  
----- 별표 7-----  
-----

-----  
-----  
-----  
-----  
-----

----- 별표 7-----  
-----  
-----  
-----  
-----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  
-----  
-----  
-----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 요구일 전 별표 9 및 별표 10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9 및 별표 10에 규정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  
-----.

1. -----  
---- 별표 8-----  
-----  
-----  
-----.

2. ----- 별표 8-----  
-----  
-----.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삭 제>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및 별표 1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  
-----  
-----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 제2항까지 및 제4항-----  
-----  
-----  
-----  
-----  
-----  
-----  
-----

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5와 같다.

⑨ (생략)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⑦ -----  
-----  
----- 별표 10과 -----  
----- 별표 11과 ---.

⑧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2항-----  
-----  
-----  
-----.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삭제>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9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11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6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신 설>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다.

<삭 제>

<삭 제>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  
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  
표 18과 같다.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  
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제30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  
다.

제31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  
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  
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  
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  
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  
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  
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3과 같다.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  
38조의4제1항제2호-----  
-----  
-----  
-----.

1. ~ 5. (현행과 같음)

제30조(5급으로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8호서식-----.

<삭 제>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 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

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2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삭 제>

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  
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 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  
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  
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  
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  
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  
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  
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  
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33조(자격증 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평정점은 별표 22와 같다.

제34조 (생략)

제31조(자격증 가점) ① -----  
-----  
-----  
----- 별표 14와 --.

② -----  
-----  
-----  
----- 별표 15-----.

제32조 (현행 제34조와 같음)

[붙임]

## 관 계 법 령

### □ 지방공무원법(시행 2025. 7. 1.)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지방공무원 임용령(시행 2025. 10. 1.)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시행 2024.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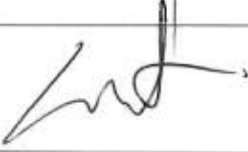
**제3조(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직위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지방전문경력관직위로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 업무 분야 등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유지웅			
곽외진			
이은경	이은경		
김지훈			
한병우			
신정재			
하서영	